

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30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확보와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, 위원회 회의개최일의 정례화를 필요시 개최하는 등의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고성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외의 범위 확대(안 제2조제3항)
- 나. 회의 개최일을 필요시로 조정(안 제4조제1항, 제2항)

3. 관련근거

- 자치법규 정비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각 실·과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”을
“본청 실·과장, 직속기관의장(농업기술센터과장 포함), 당항포관리
사무소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①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~②(생략)</p> <p>③당연직 위원은 <u>각 실·과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으로</u>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④~⑤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u>본청 실·과장, 직속기관의장(농업기술센터과장 포함), 당항포관리사무소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<u>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</u>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필요시 <u>마다 수시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삭 제</p>